

유명인의 사생활 보호와 언론 자유의 충돌 ②

연방헌법재판소 '캐롤라인(caroline von Monaco iii) 판결'의 주요 내용

권용덕 독일 쾰른대 법학 박사과정

I. 들어가며

연예인 또는 유명인의 사생활은 대중의 관심을 끄는 흥미로운 주제이다. 언론은 이들을 취재 보도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사적 영역을 담고 있는 사진을 빈번히 게재한다. 지난번 글¹⁾에서 소개한 캐롤라인 사건에서는 일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가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헌법」에 해당하는 독일 「기본법」(Grundgesetz)의 기본적 권리에 입각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기본권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언론이 특정 사안을 보도할 경우, 사진 게재 여부는 개인의 이익(사생활의 보호)과 대중의 정보 이익(정보 가치)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는 해당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대해 검토하였고, 특정 상황에 따른 기본권 보장의 우위를 구체화하였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번 글에 이어 기본권 충돌의 경우 보호의 우위를 정하기 위해 제시된 주요 개념들을 중심으로 연방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본다.

1) 권용덕 (2024). 유명인의 사생활 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충돌①: 캐롤라인 판결의 사실관계 및 당사자들의 주장. <언론중재>, 2024년 봄호 (통권 170호), pp.78-89.

II. 사건의 쟁점 요약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은 캐롤라인 공주가 아버지의 병환 보도에 첨부된 사진(생모리츠 거리에서 캐롤라인 공주와 남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의 게재를 문제 삼은 소송을 기각한 함부르크 고등지방법원(Oberlandesgericht Hamburg)의 판결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다른 두 장의 사진(캐롤라인 공주가 남편과 체어리프트(chairlift)에 탑승한 사진)에 대해서는 해당 고등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언론사 'E'의 항소를 기각하여 함부르크 지방법원이 내린 보도 금지 조치를 복원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세 당사자(캐롤라인 공주, 언론사 'E' 및 'K')의 헌법소원 절차에서 법익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중심 개념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대중의 "정보 이익"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해당 개념을 들어 언론사 'K'의 주간지 "지벤타게(7 Tage)"에 게재된 캐롤라인 공주의 남편이 케냐에 소유한 별장을 임대한다는 보도에 대해 항소심을 뒤집어 함부르크 지방법원의 보도 금지 결정을 확정하였다. 연방대법원은 별장 임대 보도가 유럽인권재판소(Europäischer Gerichtshof für Menschenrechte, EGMR)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관심사"나 "역사적 사건"에 해당하지 않고, 여론 형성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세 당사자는 하급심 판결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²⁾

III. 법익의 균형점 –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1.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란?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에 규정된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는 출판 매체의 종류, 방향, 내용 및 형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언론의 자유는 여론 형성에 있어 필수적 요소이다.³⁾ 여기에는 언론사의 보도물에 사진을 추가할지 여부와 방법에 대한 결정 권한도 포함된다. 사진의 문구는 해당 사진이 사용된 보도에 대한 헌법상 보호 대상의 일부로 볼 수 있다.⁴⁾ 언론의 역할은 대중에게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대중의 의견 형성 및 그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이다.⁵⁾ '언론'의 개념⁶⁾은 그 형식에 있어 광범위한 발전 가능성이 열려 있다.⁷⁾ 과거

2) 캐롤라인 공주, 언론사 'E' 및 'K'의 헌법소원: 캐롤라인 공주의 함부르크 고등지방법원과 연방대법원 판결 (1 BvR 1626/07); 언론사 'E'의 함부르크 지방법원 및 연방대법원 판결 (1 BvR 1602/07); 언론사 'K'의 함부르크 지방법원의 결정과 연방대법원 판결 (1 BvR 1606/07). 인권재판소가 제시한 주요 개념으로 "일반적인 관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의 각주 30을 참조.

3) Vgl. BVerfGE 12, 205, 260 = NJW 1961, 547 – Deutschland–Fernsehen.

4) Vgl. BVerfG, Beschluss der 1. Kammer des Ersten Senats vom 14. Februar 2005 – 1 BvR 240/04 –, NJW 2005, S. 3271, 3272.

5) BeckOK GG/Schemmer, 58. Ed. 15. 6. 2024, GG Art. 5 Rn. 37.

6) BVerfGE 66, 116, 134 = NJW 1984, 1741 – Wallraff.

7) Vgl. Sachs/Bethge, 9. Aufl. 2021, GG Art. 5 Rn. 68.

의 신문 또는 방송(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한 보도를 넘어 현재 더욱 다양한 방식(인터넷 신문, 개인의 인터넷 방송 등)으로 정보 유통이 가능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출판물이 인쇄된 형태로 배포에 적합하고 의도된 방식으로만 유통 과정을 거친다면, 언론의 자유는 출판물의 특성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출판물의 생산 및 복제 방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쇄물의 내용과 무관하게 언론의 자유가 보호 된다.⁸⁾ 예를 들어 유명인에 관한 흥미 위주의 보도라도 언론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⁹⁾

한편 「기본법」 제1조 제1항 및 제2조 제1항의 일부로서 일반 인격권은 보다 좁은 개인적 삶의 영역을 보호하고 그 기본 상태의 유지를 보장한다.¹⁰⁾ 일반 인격권은 구체화되지 않은 기본권¹¹⁾으로서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며, 그중 공통분모는 개인의 완전성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¹²⁾ 이 권리의 내용은 일반적, 최종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자신의 인격 표현, 사회적 인정 및 개인적 명예에 대한 처분권¹³⁾을 포함한다. 이러한 인격권은 인격 발달에 중대한 표현을 위조하거나 왜곡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며¹⁴⁾, 개인에 대한 보도와 인격 발달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의 유포를 제한한다.¹⁵⁾ 행동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¹⁶⁾는 개인의 한정된 삶의 영역과 그 기본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하다. 사생활 보호는 사적 영역(공간적 측면)에서-집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도-기본권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평화롭게 지낼” 욕구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개인의 휴식 공간¹⁷⁾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¹⁸⁾ 사적 또는 일상적으로 묘사된 인물을 보여주는 사진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적 결정은 인격권의 보호, 특히 개인의 초상권 보호 및 사생활 보호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생활 보호의 영역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¹⁹⁾ 한편 일반 인격권의 보호는 국가가 제3자에 의한 해당 권리에 대한 침해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²⁰⁾ 일반 인격권은 구체적으로 개인의 초상에 대한 일반적 또는 포괄적 처분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초상권은 타인이

8) BVerfGE 25, 295, 307 = NJW 1969, 1019 – Zeugnisverweigerungsrecht; BeckOK GG/Schemmer, 58. Ed. 15. 6. 2024, GG Art. 5 Rn. 42.

9) Vgl. BVerfGE 101, 361, 390.

10) BVerfGE 72, 155, 170 = NJW 1986, 1859; vgl. BVerfGE 54, 148, 153; 97, 391, 405; 114, 339, 346; BeckOK GG/Schemmer, 58. Ed. 15. 6. 2024, GG Art. 5 Rn. 118.

11) BVerfGE 54, 148, 153 = NJW 1980, 2070 – Eppler; BVerfGE 114, 339, 346 = NJW 2006, 207 – Stolpe.

12) Sachs/Rixen, 9. Aufl. 2021, GG Art. 2 Rn. 59; BeckOK GG/Schemmer, 58. Ed. 15. 6. 2024, GG Art. 5 Rn. 118.

13) BVerfGE 54, 148; 153 f. = NJW 1980, 2070 – Eppler; BVerfGE 93, 266, 290 = NJW 1995, 3303 – Soldaten sind Mörder; BVerfGE 99, 185, 193 = NJW 1999, 1322 – Scientology.

14) BVerfGE 97, 125, 148 f. = NJW 1998, 1381 – Caroline I.

15) BVerfGE 152, 152 Rn. 80 – Recht auf Vergessen I; BeckOK GG/Schemmer, 58. Ed. 15. 6. 2024, GG Art. 5 Rn. 118.

16) ErfK/Schmidt, 24. Aufl. 2024, GG Art. 2 Rn. 35.

17) Vgl. BVerfGE 27, 1, 6 f.

18) gl. BVerfGE 101, 361, 382 ff., 384.

19) Vgl. BVerfGE 101, 361, 380 ff.

20) BVerfGE 114, 339, 346 = NJW 2006, 207 – Stolpe; BeckOK GG/Schemmer, 58. Ed. 15. 6. 2024, GG Art. 5 Rn. 118.



자신의 사진을 제작하고 사용할 때, 개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에 대해 결정할 능력을 보장한다. 당사자가 특정 상황에서 이미지를 분리하여 관리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제3자는 언제든지 해당 이미지를 재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상권의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미지의 재생산이 쉬울수록 초상권 보호의 필요성을 더욱 커진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격권은 더 쉽게 침해될 수 있다.²¹⁾

2.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헌법상 한계

「기본법」 제5조 제2항은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일반 법률 규정,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적 조항 및 개인의 명예에 대한 권리에 의해 제한된다.”²²⁾ 일반 법률 규정에는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문에서 보장하는 권리 자체에 반하는 것이 아닌, 특정 의견과 관계 없이 그 자체로 법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모든 법률이 포함된다.²³⁾ 구체적으로 「미술저작권법」(Gesetz betreffend

21) BVerfGE 101, 361, 380 f. 부모가 공개된 장소에서 그의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진이 찍힌 상황이라면 이들은 「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격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추가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BVerfGE 101, 361 385; 119, 1 24; BeckOK GG/Schemmer, 58. Ed. 15. 6. 2024, GG Art. 5 Rn. 123 참고.

22) Diese Rechte finden ihre Schranken in den Vorschriften der allgemeinen Gesetze, den gesetzlichen Bestimmungen zum Schutze der Jugend und in dem Recht der persönlichen Ehre.

23) BVerfGE 117, 244 260.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und der Photographie: KUG) 제 22조 이하의 조항과 독일 「민법」 제823조 제1항에 규정된 민법상 인격권 보호²⁴⁾가 일반 법률 규정에 포함된다.²⁵⁾ 한편 「기본법」 제2조 제1항과 제1조 제1항에 따른 일반 인격권은 기본법 제2조 제1항 후문²⁶⁾에 따라 제한된다.

「미술저작권법」 제22조 이하에 규정된 개인의 사진 공표에 관한 규정은 제1문에 규정된 인물의 초상 공표에 대한 동의 유보-특히 동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현대사 분야의 초상, 그리고 동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초상권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 경우-를 구체적 내용으로 한다. 상충되는 법적 이익을 형량할 때, 초상권자의 보호 필요성과 언론이 인식하는 대중의 정보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²⁷⁾

「유럽인권협약」(Europäische Menschenrechtskonvention, EMRK) 제8조는 사생활 존중에 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협약은 국내법상 일반 연방법으로서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근거 중 하나인 일반법이기도 하다.²⁸⁾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 언론사의 보도는 일반 인격권에 따른 보호 청구를 제한할 수 있고, 이 때 인터넷에서 유포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과 당시 보도의 중요성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상충되는 기본권을 비교하여야 한다.²⁹⁾ 언론은 표현의 자유(「유럽인권협약」 제10조 제1항 제1문)와 정보 및 의견 전달과 수신자의 자유(「유럽인권협약」 제10조 제1항 제2문)의 적용을 받아 활동한다. 특히 언론의 보도가 사진의 유포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유럽인권협약」 제10조 제1항은 이를 보장한다. 피사체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 존중에 대한 권리와 균형을 고려하여 해당 언론의 자유 제한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³⁰⁾

언론 보도가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유럽인권협약」 제10조 제1항에 따른 표현의 자유가 더욱 보호되어야 한다. 언론의 보도가 “대중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 여부는 언론의 자유가 일반 인격권(「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조 제1항)의 보호 범위를 제한하는데 중요한

24) Wer vorsätzlich oder fahrlässig das Leben, den Körper, die Gesundheit, die Freiheit, das Eigentum oder ein sonstiges Recht eines anderen widerrechtlich verletzt, ist dem anderen zum Ersatz des daraus entstehenden Schadens verpflichtet.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재산 또는 기타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25) Vgl. BVerfGE 7, 198, 211; 25, 256, 263 ff.; 34, 269, 282; 35, 202, 224 f.

26) [Jeder hat das Recht auf die freie Entfaltung seiner Persönlichkeit], soweit er nicht die Rechte anderer verletzt und nicht gegen die verfassungsmäßige Ordnung oder das Sittengesetz verstößt. (모든 사람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 질서나 도덕법을 위반하지 않은 한,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전시킬 권리가 있다].)

27) Vgl. BVerfGE 35, 202 224 f.; 101, 361, 387.

28) Vgl. BVerfGE 74, 358, 370; 82, 106, 114; 111, 307, 316 f.; 120, 180, 199 f.

29) Vgl. BVerfGE 152, 152, 202 ff.; BeckOK GG/Schemmer, 58. Ed. 15, 6, 2024, GG Art. 5 Rn. 60.1.

30) Vgl. EGMR, - 2. Sektion -, Urteil vom 17. Oktober 2006, Beschwerde-Nr. 71678/01, Gourguenidze gegen Georgien, §§ 37, 55.

요인이 된다.³¹⁾ 일반 인격권 및 「미술저작권법」 제22조 이하에 따른 초상권은 정보가 대중매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대중에 전달되는지 여부에 의해 그 보호의 범위가 정해진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언론이 유명인의 공개석상의 모습과 사생활 사이의 간극을 보도하는 것만으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유명인은 자신의 삶의 계획 및 방향을 보여줌으로써 대중에게 본보기 및 대조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의 정당한 정보 이익의 범위를 유명인의 스캔들, 도덕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불쾌한 행동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³²⁾ 보도의 내용이 흥미롭거나 그 표현 방식이 대중의 관심을 끄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 해당 보도의 내용은 여론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보도가 단지 흥미 위주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 그 중요성을 부정하면, 이는 「유럽인권협약」 제10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것일 수 있다.³³⁾ 보도 내용이 “단순한 흥미”에 있다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여론 형성과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 즉 보도 내용이 흥미를 유발하는 것은 주관적, 객관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있어 미디어 활동의 필수적 요인이다. 또한 기존 언론은 다른 매체들의 흥미로운 콘텐츠와 경쟁하고 있고, 따라서 흥미로운 콘텐츠, 그와 함께 시각적 표현(사진, 삽화 등)은 저널리즘의 경제적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언론 보도에서 시각적 표현의 중요성이 최근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연방헌법재판소는 인정하였다.³⁴⁾

3. 법익 균형을 위한 주요 기준: 언론 보도의 공공성, 위법하게 획득한 사진 및 현대사 인물

법원은 언론의 보도와 시각적 표현의 정보 가치를 판단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사건이 여론 형성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본다. 법원의 역할은 시각적 표현의 제작 및 유포가 인격권 보호에 미치는 악영향과 언론의 자유의 균형점을 찾는 데 있다. 한편 연방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언론의 주관적 권리뿐만 아니라 여론 형성 과정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시민의 여론 형성의 자유를 동시에 보장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언론 보도는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인의 법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원칙적

31) Vgl. BVerfGE 7, 198 212; EGMR, - 1. Sektion -, Urteil vom 1. März 2007, Beschwerde-Nr. 510/04, Thnsbergs Blad u.a. gegen Norwegen, § 82; EGMR, - 4. Sektion -, Urteil vom 16. November 2004, Beschwerde-Nr. 53678/00, Karhuvaara und Itälehti gegen Finnland, § 40: 법원은 민주 사회에서 수행하는 필수적인 언론의 기능을 -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보호, 기밀 정보의 공개를 방지할 필요성과 관련하여 일정한 한계가 있으나 - 자신의 의무와 책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정보와 생각을 전달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이 때 법원은 언론의 자유가 어느 정도 과장이나 심지어 도발에 대한 의존 가능성도 포함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32) Vgl. BVerfGE 101, 361, 390.

33) Vgl. BVerfGE 120, 180, 203 f.

34) Vgl. BVerfGE 101, 361, 392.

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³⁵⁾

법익의 균형점은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저널리즘 기준”에 의해 특정되도록 해야 하는 데 있다. 언론의 자기결정권은 상충되는 법익을 비교 형량 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이익에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부여할지, 관련 법익을 어떻게 균형 있게 보장할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³⁶⁾ 즉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특정 인물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 받아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의 이익과 영향을 받는 사람의 상충되는 이익을 비교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법원의 책무이다. 언론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사진을 게재하고 특정 보도의 맥락에 배치하기로 결정하는 등,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스스로 결정한다. 다만 언론은 이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사생활 보호를 고려하여야 한다.³⁷⁾ 사진의 정보 가치를 결정하는데 있어, 사진은 보도에서 보완적 역할을 한다. 즉 사진은 보도에 기술된 내용의 진위를 강조하는 등, 그 내용을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³⁸⁾ 보도가 유명인을 묘사하는 데 국한되어 있다면, 해당 보도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 이 경우 정보 이익을 위한 언론의 자유가 일반 인격권에 우선하는 것은 헌법상 적절하지 않다.³⁹⁾

언론이 보도에 사용한 사진이 언론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또는 집요한 스토킹을 통하는 등 위법하게 획득한 경우, 일반 인격권의 보호가 우선하므로 언론의 자유는 제한된다. 또한 해당 인물이 촬영된 상황과 묘사 방식도 언론의 자유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시각적 묘사가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생활의 세부 사항을 담고 있는 경우 사진과 관련된 인격권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 즉 이 경우 언론의 자유는 제한된다. 사진이 촬영된 상황에 따라 해당 인물이 일반적으로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격권의 보호가 언론의 자유보다 더욱 중요하다.⁴⁰⁾ 예를 들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사생활이 보호되는 상황, 즉 특별히 보호되는 공간에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⁴¹⁾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현대사 인물”의 법적 개념은 법익 충돌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기준으

35) Vgl. BVerfGE 20, 162, 174 ff.; 66, 116, 134; 77, 346, 354; vgl. BVerfGE 120, 180 208.

36) Vgl. BVerfG, Beschluss der 1. Kammer des Ersten Senats vom 26. April 2001 – 1 BvR 758/97 u.a. –, NJW 2001, S. 1921 1922.

37) BVerfGE 104, 92 111 f.; 개인의 이익(사생활 보호)과 정보의 가치를 비교형량할 때, 법원은 보도가 대중의 중대한 관심사인가, 정보에 대한 이익이 중대한가를 그 판단 기준으로 본다. BVerfGE 34, 269, 283; 101, 361, 391 참고; 법원은 정보 이익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관련 표현의 보도 내용이 가치 있는지 없는지, 또는 구체적인 것인지 모호한 것인지 평가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하며, 보도가 여론 형성 과정에서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판단하는 데 제한적 역할을 갖는다. BVerfGE 120, 180 206 참고.

38) Vgl. BGHZ 158, 218, 223; BGH, Urteil vom 19. Oktober 2004 – VI ZR 292/03 –, NJW 2005, S. 594 595 f.rr

39) BVerfGE 120, 180 207 f.

40) Vgl. BVerfGE 120, 180, 207. 그러나 인격권 보호의 중요성은 공간적으로 분리된 상황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언론 보도가 해당 인물이 휴식을 취하거나 직업 및 일상 생활에 관여하지 않은 순간을 게재하는 경우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

41) Vgl. BVerfGE 101, 361 384.

로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다시 인용되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보도에 유명인의 사진이 사용되었을 때, “정보에 대한 대중의 이익(이하, 정보 이익)”이 「미술저작권법」 제23조⁴²⁾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이익” 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정보 이익과 묘사된 인물의 정당한 이익 간의 균형은 구체적인 사례별로 다루어야 한다.⁴³⁾ 현대사 인물이라는 개념은 헌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개념을 제한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개별 사안 별로 검토하여 “현대사 영역(「미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보장하는 정보 이익은 “현대사 영역의 사진”의 기준에 맞추어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여기서 「미술저작권법」 제23조 제2항의 “정당한 이익”은 현대사에 있어 중요한 인물만을 의미한다.⁴⁴⁾

IV. 연방헌법재판소의 사안 판단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대법원이 세부적으로 발전시킨 개념들(현대사 인물, 정보 이익, 사생활 보호,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을 고려하여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의 보호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였다. 캐롤라인 공주의 함부르크 고등지방법원과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1 BvR 1626/07)과 언론사 ‘E’의 함부르크 지방법원 및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1 BvR 1602/07)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체적 판단 근거를 알아본다.⁴⁵⁾

연방대법원은 캐롤라인 공주가 공개된 장소에서 휴가 중 찍힌 사진이 함께 게재된 보도(슈피겔(Der Spiegel)) 03/9호에 실린 겨울 휴가에 관한 보도)에 대해 “사생활의 핵심 영역”에 속한

42) 「미술저작권법」 제23조 (1) 동법 제22조에 따라 필요한 동의 없이 1. 현대사 영역의 사진, 2. 인물이 풍경이나 기타 위치 옆에 부수적으로만 나타나는 사진, 3. 인물이 참여한 회의, 집회 및 이와 유사한 행사 사진, 4. 주문 제작되지 않은 사진(단, 배포 또는 전시가 예술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은 배포 및 전시할 수 있다. (2) 이 권한은 묘사된 인물 또는 해당 인물이 사망한 경우, 그 친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배포 및 전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3) Vgl. BVerfGE 101, 361 392; BVerfG, Beschluss der 1. Kammer des Ersten Senats vom 26. April 2001 – 1 BvR 758/97 u.a. –, NJW 2001, S. 1921 1923 f.

44) Vgl. BVerfGE 101, 361, 391 f.

45) 연방헌법재판소는 언론사 ‘K’의 함부르크 지방법원의 결정과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1 BvR 1606/07)에 대해 「기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근거로 판단하지 않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언론사 ‘K’에 대한 사진보도금지처분 – 함부르크 지방법원 및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은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하급심 판결에서 언론사가 캐롤라인 공주와 그녀의 남편이 케냐에서 빌라를 임대했다는 보도에 사용한 사진이 정보 가치가 있는지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익 형량을 함에 있어 기본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관련 정황 – 결정적 영향을 미친 이유 – 을 공개하여 명확히 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언론의 자유를 고려하여 보도에 공주의 사진을 함께 게재하는 것을 정당화한 이유를 불충분하게 소명하였다. 또한 공주의 남편이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그녀가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중요성이 미미한 국가의 왕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도 대상에 대한 일반적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연방대법원은 해당 언론사가 공주와 그녀의 남편이 휴가 분위기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은 크기의 사진을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 사진은 부부가 케냐의 별장에 머물던 날 촬영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날에 촬영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이를 해당 보도와 사진에서 유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대법원이 해당 사진의 유포를 금지한 처분은 헌법적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해당 연방대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BVerfGE 120, 180, 221 ff. 참고.



다고 보았으나, 해당 보도는 캐롤라인 공주의 사생활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 충족을 넘어 정보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녀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보 이익이 사생활 보호 이익에 우선한다고 보았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언론이 캐롤라인 공주가 스키 휴양지로 유명한 취르스(Zürs)에서 남편과 가진 스키 여행과 생모리츠로의 여행을 보도(슈피겔(Der Spiegel)) 04/12호)한 것에 대해 사생활 보호 이익이 정보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캐롤라인 공주의 사생활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 충족을 넘어서는 정보 이익은 생모리츠 여행이라는 사적인 행사만을 언급한 해당 사진으로 유추할 수 없기 때문에 공주의 사생활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로젠발(Rosenball) 파티 행사가 역사적 사건일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나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공주의 사진 게재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⁴⁶⁾

연방대법원은 캐롤라인 공주의 부친의 병환을 다룬 보도(프라우 임 슈피겔(Frau im Spiegel) 02/9호)에서 공주가 남편과의 휴가 중 길거리에서 찍힌 사진을 함께 게재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즉 모나코 국왕의 병환은 대중의 관심이 높은 사건이고, 언론은 캐롤라인 공주를 포함한 그의 자녀들이 가족 내 연대 의무와 휴가에 대한 욕구를 포함한 사생활을 보도함으로써 정당한 정보 이익을 갖는다고 본 것이다. 한편 사진이 비밀스러운 수단이나 사진 기자들의 지속적인 스토킹과 같이 위법하게 입수된 경우 헌법상 일반 인격권 즉, 사생활 보호 이익이 우선한다. 그러나 언론사 'E'는 사진이 촬영된 상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출하였고, 캐롤라인 공주는 함

46) Vgl. BVerfGE 120, 180, 215 ff.

부르크 지방법원이나 고등지방법원에 제출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공주는 사진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촬영되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⁴⁷⁾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대법원이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무시하거나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캐롤라인 공주의 주장을 근거 없다고 판단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가 충돌할 경우 이를 형량하여, 언론 보도 시 개인의 시각적 표현을 공개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익 형량 시 구체적인 요소로 유럽인권재판소는 정치인(정치인/정치적 인물)과 공적 생활 또는 대중의 눈에 띄는 기타 인물(공인/공적인 사람) 및 일반 사적 인물(일반인/평범한 인물)을 구분하였다. 따라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일반 시민에 대한 보도는 다른 공인에 대한 보도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되며, 정치인에 대한 보호가 제일 취약하다고 보았다. 연방대법원은 캐롤라인 공주를 정치인 그룹이 아닌 일반인 그룹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유럽인권재판소는 공주를 공인의 예로 보았다.⁴⁸⁾

V. 결론

독일 「기본법」에는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법원은 기본권이 상충되는 경우, 그 우열을 가려 이해 당사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보호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에 관한 권리와 일반 인격권(사생활 존중, 초상권, 완전성 보장 등)은 상황에 따라 구체적 기준을 통해 보장 및 제한되어야 한다. 캐롤라인 사건은 해당 이익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해 “정보 이익”, “현대사 인물”, “보도의 대중 영향력”, “정보의 전파성”, “사진 수집의 위법성”,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등의 개념을 들고 있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보호의 우위가 있는 이익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개념들은 보호 법익의 우열을 가리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47) Vgl. BVerfGE 120, 180, 216 f.

48) Vgl. BVerfGE 120, 180, 218 f.